

증 권 거 래 설 명 서

(전문투자자용)

전문투자자 확인서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그 밖의 용어의 정의) 및 동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의거 유가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편 영업행위규칙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에서 회사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의무나 영업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문투자자의 범위

- 1)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 2)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 3)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나.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영업상의 제한

- 1) 일종매매거래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
- 2) 부적격자의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상담 금지의무
- 3)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의무
- 4) 투자권유의 적합성 의무
- 5) 비상장·비등록주식, 투자등급 이하 채권·파생상품 권유 금지
- 6) 초보고객 등에 대한 일종매매 거래 및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 이용권유 제한

3. 아울러 귀사(하)가 다음에 해당하여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일반고객으로 분류되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1)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2년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주권상장법인
-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5) 지방자치단체
 - 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4. 이 확인서 접수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매매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율

1. 위탁/매매 수수료 산정기준

- 가.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위탁수수료는 동일종목이 동일일에 성립(매도/매수 및 거래매체를 구분)한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채권 및 수익증권의 매매수수료는 매매거래대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 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상하며, 최소 수수료 금액은 10원입니다.
- 라. 휴대폰, PDA, ARS를 이용한 주문에는 HTS를 이용한 주문 시 적용하는 수수료율 중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 수수료율

- 가. 주식,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REITs, ELW, ETN

1) 영업점, 고객센터 주문 (OFF-Line)

구분	약정대금	KRX	NXT
유가증권/코스닥	2억원 이하	0.50%	0.499%
상장주식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5% + 100,000원	0.449% + 100,000원
ETF			
신주인수권증권·증서	5억원 초과	0.40% + 350,000원	0.399% + 350,000원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 ETN			
K-OTC	-	0.50%	-
비상장주식	-	1.00%	-

2) 온라인 주문 (ON-Line)

구분		약정대금		KRX	NXT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 ETN	영업	당일 약정 *주1)	300만원 이상	0.065%	0.064%
	점		50만원 이상	0.15%+1,000원	0.149%+1,000원
	관리		300만원 미만		
	계좌	50만원 미만	0.35%	0.349%	
	은행				
연계	-		0.014%	0.013%	
계좌					

K-OTC		-	0.30%	-
비상장주식		-	1.00%	-

*주1) 당일약정 :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구분 별 징구

- ① 단, 전월(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약정*주2) 기준 20억원 이상은 KRX 0.015% / NXT 0.014%,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은 KRX 0.029% / NXT 0.028%,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은 KRX 0.035% / NXT 0.034%를 적용합니다.(전월(또는 직전3개월 월평균)약정 기준은 당일 약정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주2) 전월(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약정 :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주식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의 합으로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중 큰 금액

- ② My Choice Loan 약정 계좌는 HTS주문을 통해 용자매매시 주식수수료가 KRX 0.08% / NXT 0.079%로 적용됩니다. 단, My Choice Loan 적용 주식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계좌는 기존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 ③ 2012년 8월 24일 이전 기본형Plus(0.028%), 프리미엄(0.05%), 프리미엄Plus(0.1%) 적용 고객의 경우 기존 수수료를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K-OTC는 0.30% 적용)
- ④ 신규 계좌 개설 시 선택한 수수료율은 고객이 보유한 전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⑤ 2013년 6월 10일 이후부터 은행연계계좌에서 MY tRadar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업점관리계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 모바일 등

구분	약정대금	KRX	NXT
휴대폰	-	0.1%	0.099%
모바일(증권통 등)	-	0.15%	0.149%
ARS	-	0.197%	0.196%

4) 투자일임플랫폼

구분	약정대금	KRX	NXT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2억원 이하	0.50%	0.499%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 ETN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5% + 100,000원	0.449% + 100,000원
	5억원 초과	0.40% + 350,000원	0.399% + 350,000원
K-OTC	-	0.50%	-
비상장주식	-	1.00%	-

※ 상기 상품 외 거래 시 해당상품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5) MY tRader 서비스

서비스 안내	수수료율
서버자동주문, 자동분할주문, Market View, Global View, tRadar 알리미, Smart Radar, tRadar 포트폴리오 등	0.065%

- ① tRadar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3년 6월 10일 이전 신청 고객에 한합니다.
- ② 2013년 6월 10일 이후 MY tRader 서비스는 영업점관리계좌일 경우 별도의 수수료율 신청 없이 해당 계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6) MY tRadar-PRO 서비스

서비스 안내	약정대금		수수료율
MY tRadar 서비스 외 Financial View, tRadar 차트강도(주식/업종/해외지수) 등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약정 합계*주1)	20억원 이상	0.03%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04%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0.05%
	당일 약정 합계*주2)	300만원 이상	0.10%
		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0.15% + 1,000원
		50만원 미만	0.35%

*주1) 계좌별 전월 거래소/코스닥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 합계가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중 큰 금액

*주2) 계좌별,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별, 현금/신용/대출 주문별 징구

- ① MY tRadar 서비스 및 MY tRadar-PRO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온라인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 ② tRadar-PRO 서비스 신청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티레이더M, MY SMART W(iPad 제외), MY SMART t에서 매매 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과표기준 : 매도약정대금)

구분	거래소(주식,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코스닥(주식)	코넥스	K-OTC	KSM 및 주식장외시장매매
증권거래세	0.05%	0.20%	0.10%	0.20%	0.35%
농어촌특별세	0.15%	-	-	-	-

※ 단,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종목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세입니다.

나. 채권

구분		기준	수수료율	
			오프라인	온라인
거래소	일반채권 소매채권	90일 미만	없음	없음
		90일 이상 120일 미만	0.01%	0.01%
		120일 이상 210일 미만	0.02%	0.02%
		210일 이상 300일 미만	0.03%	0.03%
		300일 이상 390일 미만	0.05%	0.05%
		390일 이상 540일 미만	0.10%	0.10%
		540일 이상 730일 미만	0.15%	0.15%
		730일 이상	0.20%	0.15%
	주식관련사채	1억 미만	0.20%	0.15%
		1억 이상 10억 미만	0.15% + 50,000원	0.15%
		10억 이상	0.10% + 550,000원	0.10% + 550,000원
	소액채권		0.60%	0.60%
	국민주택1종 매도대행분(공동계좌)		0.30%	
	국채전문유통시장		0.002%	
	상품 對 위탁, 저축		없음	

예탁금이용료율 등

구분	요율 및 이자율(년 이율)		
예탁금이용료율	구분	고객 예탁금구간	이용료율
	원화	100만원 이상	0.60%
		100만원 미만	1.00%
	외화	-	0.00%
미수금 연체이자율	12.00%		

※ 예탁금이용료는 매 3개월(3,6,9,12월 세번째 일요일 익영업일)마다 지급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용대주 이용료는 매월 첫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계산식 : 일평균잔고 × 이용료율 × (일수/365)

위탁증거금율

구 분	내 용
종목별 증거금율	당사에서 지정한 종목별 증거금율이 적용됩니다. - A등급 : 30% (현금 6%, 대용 24%) - B등급 : 40% (현금 8%, 대용 32%) - C등급 : 50% (현금 10%, 대용 40%) - D등급 : 60% (현금 12%, 대용 48%) - N등급 : 100% (현금 100%)
50% 증거금율	거래대금의 50% (현금 10%, 대용 40%)가 증거금으로 적용됩니다. (단, N등급 종목의 경우 현금 100% 증거금으로 적용됩니다.)
100% 증거금율	거래대금의 100%가 증거금으로 적용됩니다.

※ 종목별 및 50% 증거금율은 미수 발생이 가능하며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익일 반대매매 및 미수동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0% 증거금율 또한 제세금 및 수수료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증거금률 거래를 신청한 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탁증거금률 50% 계좌 가정 시, 예수금의 50%로 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 결제 전 나머지 예수금(50%)으로 RP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예수금의 50%만큼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미수금 미납 시 처리기준

1. 현물미수금 처리 기준

- 당사는 고객께서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3일결제)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일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가. 고객께서 결제시한(3일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는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습니다.
- 나. 미수금 충당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이 호가중개시스템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 이내의 분할거래호가(호가수량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호가로서 당일 매매기준가격의 100분의 30이상의 가격)로 합니다.
- 다. 고객께서는 상기 사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부족액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라. 고객께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 당사는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미수금 등의 발생 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당사는 고객과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고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② 고객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수동결제좌제도

미수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30일간 증거금 100%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가.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나.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제좌로 지정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1)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결제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2) 1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경우

2. 적용효과 :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 (대용증권 불인정)

3. 기 타

가. 동결제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

나. 타 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회를 통하여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 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증거금 100% 적용

다. 고객님의 신용거래정보 제공 동의가 없을 경우, 사전 100%증거금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신용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후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의 수탁금지 등

1. 당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주문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의 수탁을 거부합니다.
 - 가. 고객의 매매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제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나.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유가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당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 다. 다음 각목의 사항을 감안할 때 고객이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상장 유가증권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 2) 상장 주식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 3)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2. 당사는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주문서비스 등의 안내

구분		항목	일반 주문서비스
주문접수서비스	① 주문서비스 (주문의 생성/접수방법)	생성주체	사람, 컴퓨터(자동주문시스템)
		생성위치	전국
		입력매체	문서, 유선전화, FAX, 스마트폰, ARS, HTS, 자동주문시스템 등
		전달매체	인편, 전화망(유/무선), 공용망(인터넷)
		접수매체	당사 임직원, 당사 시스템
	② 호가점검서비스	호가의 적합성 점검 방법 및 지리적 위치	일반원장(당사 서울전산센터)
	③ 호가제출서비스	프로세스 유형	공용프로세스만 제공 가능함
④ 이용조건		회원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요건, 투자자요 건 등	주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계좌보유고객
⑤ 비용		부과대상/방법 등	당사 약관 및 홈페이지에 공표된 매매수수료 체계에 따름
⑥ 기타		회원선택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납 관련 유의사항

당사 임직원은 영업점 외부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입출금(고)은 귀하(사)께서 카드/통장을 수령하시고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당사 영업점 또는 당사와 제휴한 은행(은행서비스 이용신청 고객에 한합니다)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일중매매(Day-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 및 설명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 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 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4.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6.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매매(System-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 및 설명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매매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On-Line) 증권거래 설명서

1. “온라인 증권거래”라 함은 당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하며, 고객은 온라인증권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는 고객이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라 합니다)를 이용할 때 당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이용자ID와 이용자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시켜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3. 고객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서비스의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비밀번호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당사가 정한 일정횟수 이상인 경우, 당사는 해당 이용자 ID에 의한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자 비밀번호의 입력오류로 서비스 접속이 임의로 중지된 상태에서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시에는 입력 실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력한 주문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입력된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 이용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고객이 당사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여 처리된 거래에 의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통신회선상에서의 해킹 등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고객은 당사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합니다)의 장애발생시에 대비하여 당사 콜센터 또는 지점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주문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콜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주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6. 천재지변, 고객과 당사간의 통신회선의 장애,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당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에 접수된 순서대로 고객의 매매주문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주문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증권의 시세, 매매주문(정정 또는 취소 주문 포함)의 처리, 주문/체결내역의 조회 등이 지연되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천재지변, 고객과 당사간의 통신회선의 장애,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 매매주문의 효력상실, 고객의 입력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력한 사항 중 미처리 또는 처리지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입력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고객 개인 시스템의 오동작, 개인통신회선의 장애 등 개인적인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10.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시장속보, 유망종목 등 시황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시황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종업원 제재내역 조회제도 이용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신청절차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영업점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징계내역 통보

-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5. 통보대상 제외

- 견책 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②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③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